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9.04.17. 개정 2024.04.2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해전대학교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대학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 ② 대학자체평가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자체평가 및 교육품질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4.04.29.>

제4조 (임기)

- ①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등 지원)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